“전북, 민주당의 심장이자 엔진”

김성주 도당위원장 “혁신위 · K-뉴딜위 참여위 등 구성 활동 전북성공시대 만들 것”

김성주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제4자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 위원장(전주병)은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엔진”이라며 “전북부흥시대의 시작을 전북성공시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20일, 도당위원장 수락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도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명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그 힘을 하나로 모아 낸다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1대 국회에는 34명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전북은 새로운 부흥의 길로 들어섰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전북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북성공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당원과 도민이 참여하는 참여당정당을 만들 것”이다며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전북도당이 중심이 되고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겠다”면서 “유능한 도당이 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달라진 정치를 실천해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를 준비하고 지역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월세전환율 2.5%로 인하

민주 윤준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발의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공시가격의 120%내로 제한 및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고 현행 10%인 월세의 세액공제를 20%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속칭 ‘깡통전세 · 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돼도 신규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속칭 ‘깡통전세 · 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해 신규계약도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 월세액의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증금의 한도를 공시가격의 120%로 제한해 속칭 ‘깡통전세 · 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현 연 4%에서 2.5%로 낮추고 현재 월세액의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법’을 대표발의 했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확산 주범 전광훈 수사 철저”

국회 행안위 민주당 위원들 “한 사람의 일탈이 국민에게 큰 해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한 사람의 일탈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지를 절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며 “전광훈 목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불법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속속 판명나고 있다”면서 “전목사 본인을 포함해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숙주가 되어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퍼뜨려 대유행 사태로 번지게 했다”고 성토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 대형불법집회를 강행해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다”며 “전 국민을 감염의 위험에 빠트린 이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행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병상에서도 자신의 확진 판정을 믿지 않는다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등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위원들은 “전 목사는 지난 16일 정부와 서울시에 의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면서 “그는 이미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어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현재 전 목사와 그의 동조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며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경찰 수사에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전 목사 일당이 국가방역망을 무너뜨린 데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 을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 등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으로 서영교, 한병도, 김민석, 김민철, 김영배, 박완주,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의원 등이 있다.

/유호상기자

고의 · 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손배 청구

민주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 일부개정법안 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 · 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 ·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유호상 기자

가축 분뇨, 이제 공공주도로 처리하나

민주 이원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공공처리시설 의무화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 제 · 부안)은 20일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